

제260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14.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30
----------	------

2023. 3. 14.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2. 27.
- 나. 회부일자 : 2023. 3. 8.
- 다. 상정일자 : 2023. 3. 13.

2. 안건설명

가. 제안설명자 : 김강산 의원

나. 제정이유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

마.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안 제7조)

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안 제8조)

라.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3. 4. ~ 3. 8.) 결과 : 별도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윤선영)

의안번호 제20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2월 27일 김강산 의원이 제안하여 2023년 3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본 안건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명시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영유아의 바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2조 정의에서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의 내용을 차용하고 있음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칭함
-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일컫고 있음. 이는 정상적인 발달 여부를 파악하는 사항으로 용어 정의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영유아 발달지원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구청장은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유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도록 함

- 안 제6조는 지원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 ▶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 ▶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 사항들은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사항을 명시함

- ▶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 ▶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 ▶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 사항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안 제8조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외의 단체 등과 정보나 기술 교류, 홍보활동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 기관과 민간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임

□ 광진구 내 6세 미만 영유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월 말 기준, 총 8,279명임

<광진구 6세 미만 영유아 현황>

(2023.1.31.기준 / 단위: 명)

구 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23년	8,279	1,188	1,319	1,278	1,437	1,511	1,546
2022년	8,375	1,198	1,334	1,270	1,483	1,479	1,611
2021년	9,157	1,353	1,313	1,509	1,514	1,649	1,819
2020년	10,514	1,402	1,612	1,672	1,753	1,912	2,163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 현재 광진구가 지원하고 있는 유사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22년 실적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지원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 영유아 -지원 : 발달검사, 부모상담 등 -예산 : 6,320천원(시:구=50:50)	1,170명 발달검사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광진구 보건소)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이하 영유아 -지원 : 발달장애 검사비 및 진찰료 등 (최대 20만원 ~ 최대 40만원) -예산 : 9,592천원(국:시:구=50:25:25)	10명, 2,100천원 집행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가정복지과)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발달 지연 의심 영유아 -지원 : 발달검사, 언어발달, 정서상담 등 주1회(월4회) 서비스제공기관(11개소) 이용 바우처 제공 -예산 : 50,000천원(국:시:구=50:25:25)	71명 45,426천원 집행

□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시 및 6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음

- 6개 자치구 : 마포구, 서대문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중랑구

□ 이와 관련, 중앙정부 동향을 살펴보면,

▶ 보건복지부는 발달지연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재활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하여 검사-상담-재활·치료 서비스의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함

- ▶ 이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22.12.23)
- ▶ 이번 업무협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되었음
- ▶ 그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이후 필요한 정밀검사, 발달수준에 맞는 양육상담 및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어 양육자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발달검사는 다음 2가지 형태이며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K-DST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의 발달평가를 위해 독자 개발한 도구로 기존에 사용되던 외국 도구에 비해 검사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향상
- 사회성, 자조행동,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언어영역, 인지영역 등 6개 핵심영역을 평가하고 영역당 8문항으로 구성
-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 등 4가지 분류로 판정

▶ K-CDI (한국아동발달검사)

- 사회성, 자조행동, 대근육, 소근육, 언어표현, 언어이해, 글자, 숫자영역 등 8개 영역의 전체적인 발달 점검
- 36개월 이상 유아가 주 대상이며, 양육자 등의 관찰결과를 300문항을 체크하는 방식이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기타

- DEP검사(36개월 미만 영아, 교사나 부모 작성, 백분율(%)로 결과 제공)
- Bayley검사(200문항 체크와 함께 직접 면담조사가 병행)

□ 종합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광진구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 영유아기는 발달 지연에 대한 시기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영유아들의 발달권 보장 및 지원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